

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

전문개정	1998. 3. 9	조례 제 946호
개정	1998. 9. 23	조례 제1088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1999. 6. 29	조례 제1145호
	2000. 12. 28	조례 제1225호
	2003. 11. 18	조례 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4. 1. 8	조례 제1332호(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)
	2005. 7. 27	조례 제1396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, 제명개정)
	2006. 12. 15	조례 제1480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, 제명개정)
	2007. 3. 28	조례 제1518호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	2010. 11. 25	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, 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1. 3. 15	조례 제1763호
일부개정	2011. 6. 8	조례 제1781호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4. 8. 14	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, 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4. 11. 18	조례 제2040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5. 4. 3	조례 제2073호(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)
	일부개정 2015. 11. 5	조례 제2130호(기초생활보 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전부개정	2016. 1. 1	조례 제2154호(제명개정)
전부개정	2017. 12. 29	조례 제2321호
일부개정	2018. 4. 25	조례 제2354호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8. 12. 21	조례 제2428호
일부개정	2022. 4. 19	조례 제2857호
일부개정	2023. 11. 10	조례 제3015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)
일부개정	2024. 12. 23	조례 제3187호
일부개정	2026. 8. 14	조례 제3408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광명시 여성비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 12. 21>

1. 교육사업: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
2. 삭제 <2018. 12. 21>
3. 삭제 <2018. 12. 21>
4.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
5. 각종 교양 취미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
6. 그 밖에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이용자의 범위)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12. 21>

1.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4조(사용시간)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21>

1. 주간: 오전 9시 ~ 오후 6시
2. 야간: 오후 6시 ~ 오후 10시

② 수영장(부대시설 포함)의 일일 사용시간은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2장 교육운영

제5조(교육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매 연도 교육 시작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21>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21, 2022. 4. 19>

1. 교육의 기본방향
2. 교육의 목표, 내용, 기간, 대상자 및 인원
3. 교육생의 모집, 선발방법 및 교육 이수 내용의 평가방법
4.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정원 및 교육기간) ① 제5조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교육생 정원은

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.

〈개정 2018. 12. 21〉

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12. 21〉

1. 정규과정: 4개월 ~ 5개월
2. 단기과정: 1개월 ~ 3개월
3. 그 밖에 수시과정: 1개월 이내

제7조(교육과정 신설·조정·폐강) ① 시장은 교육수요와 시정시책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신설·조정·폐강할 수 있으며, 폐강하고자 할 때는 폐강사유와 시기를 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.

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등록되는 경우에 폐강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12. 21〉

제8조(교육신청)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. 〈개정 2018. 12. 21〉

② 수강생의 자녀 중 만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에 한정하여 센터 유아놀이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수강생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 12. 21〉

제9조(교육생 우선 선발) 시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. 다만, 우선선발 대상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. 〈개정 2018. 12. 21, 2024. 12. 23〉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
4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
5. 북한이탈주민
6.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

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[제목개정 2018. 12. 21]

제10조(강사의 위촉 등) 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9>

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21>

1.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

3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

4.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

5.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

6.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·운영하지 못한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<개정 2018. 7. 31, 2018. 12. 21>

제11조(수강료 등) ① 센터의 교육 수강자는 [별표 1]의 기준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의 우선선발 교육생은 수강료를 면제한다. <개정 2018. 12. 21>

② 수영장 이용자는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, 2018. 12. 21, 2024. 12. 23, 2026. 8. 14>

③ 수영장 이용자의 이용료 및 감면사항은 「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 <신설 2024. 12. 23, 개정 2026. 8. 14>

④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21, 2024. 12. 23>

1. 전액 반환: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

2. 일부 반환: 교육생이 수강기간 중에 수강을 포기하고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하는

경우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
제3장 삭제 <2018. 12. 21>

제12조 삭제 <2018. 12. 21>

제13조 삭제 <2018. 12. 21>

제4장 수영장 위탁관리

제14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시장은 센터 수영장을 광명도시공사, 비영리법인 또는 광명시 산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9>

[제목개정 2022. 4. 19]

제15조(위탁관리 등) 수영장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」 또는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[전문개정 2022. 4. 19]

제16조 삭제 <2022. 4. 19>

제17조 삭제 <2022. 4. 19>

제18조 삭제 <2022. 4. 19>

제19조 삭제 <2022. 4. 19>

제20조 삭제 <2022. 4. 19>

제21조 삭제 <2022. 4. 19>

제22조 삭제 <2022. 4. 19>

부칙 <2017. 12. 29 조례 제2321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4. 25 조례 제235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〈2018. 12. 21 조례 제242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2. 4. 19 조례 제285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3. 11. 10 조례 제301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4. 12. 23 조례 제318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6. 8. 14 조례 제340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교육 수강료

(단위: 원)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기술·취미·교양교육	1인/월	10,000원	○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

[별표 2] 〈개정 2018. 12. 21〉

놀이방 사용료

대 상	기 준	금 액	비 고
교육생 자녀	만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	무 료	○ 수강 시간 중 이용 가능 ○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:00~18:00

[별표 3] 삭제 〈2026. 8. 14〉

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

[별표 4] 삭제 <2026. 8. 14>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6. 8. 14>

접 수 번 호	교 육 수 강 신 청 서		
수강신청과목		성 명	
생 년 월 일		성 별	
홈페이지 ID	(*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최종 접수완료)		
주 소	광명시		
전 화 번 호	(핸드폰)	(자택)	
모집우선순위 (※ 해당란 표기)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저소득한부모가정 ③ 국가유공자(본인, 배우자, 자녀 중 1인) ④ 등록장애인(본인에 한함) ⑤ 다문화가족 ⑥ 북한이탈주민 ⑦ 막내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을 둔 가족		
제 출 서 류	1.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		
	2. 해당 증빙 서류 원본(해당자) ※ 다만,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담당자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확인(V 체크)
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모집우선순위 자격 및 수강료·이용료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()
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(인 또는 서명)			
광명시장 귀하			

[별지 제2호 서식] 〈개정 2023. 11. 10〉

접 수 번 호	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					
어 린 이	성 명		생년월일	(세)	성 별	
	주 소	경기도 광명시				
수 강 자	성 명		생 년 월 일			
	관 계		전 화 번 호			
수 강 과 목			수탁시간	시 분부터 시 분까지 (요일 :)		
수 탁 기 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개월)					
첨 부 서 류						
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(인 또는 서명) 광명시장 귀하						

어 린 이 수 탁 승 인 서						
어 린 이	성 명		생 년 월 일	(세)	성 별	
	주 소	경기도 광명시				
수 강 자	성 명		생 년 월 일			
	관 계		전 화 번 호			
수 강 과 목			수 탁 요 일			
수 탁 기 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개월)					
및 시 간	(시 분부터 시 분까지, 요일 :)					
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. 년 월 일 광 명 시 장	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 삭제 <2022. 4. 19>